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15호 2010. 4. 7.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203호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조례 제2204호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2
- 정선군조례 제2205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7
- 정선군조례 제2206호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9
- 정선군조례 제2207호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11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63호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17
- 정선군규칙 제1164호 정선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22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0-176호 토지수용재결공고.....26
- 정선군공고 제2010-177호 한국폴리텍III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4차 공고.. 30
- 정선군공고 제2010-193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33
- 정선군공고 제2010-201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36
- 정선군공고 제2010-202호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4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4. 7.

정선군조례 제2203호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35세 이상”을 “만30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제17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의결된 조례로, 국제결혼 희망자에 대한 기준연령을 낮추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낮추고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 만35세 이상 만50세 미만 ⇒ 만30세 이상 만50세 미만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4. 7.

정선군조례 제2204호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세율) ①법 제17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신고의무) ①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세 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1절의2(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5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1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5조의3(세율) ①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제25조의4(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제2장제5절(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3장제2절(제100조부터 제10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정선군조례 제2169호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를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특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 정 이 유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
(안 제3조, 제47조 ~ 제56조, 제100조 ~ 제105조)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재편성(안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5조의2 ~ 제25조의4)
- 지방세법 제173조에 기 규정되어 있는 주민세 “납세의무자” 조문 삭제(안 제20조)
- “소득세할 주민세”가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23조 ~ 제25조)

- 조례 제2169호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를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개정
-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나, '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게 되면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09년도에는 한시적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를 시행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4. 7.

정선군조례 제2205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사업소세를” 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로 한다.

제21조 및 제33조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를 각각 “부동산” 으로 한다.

제22조 중 “부동산” 을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 정 이 유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 및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 「2010년도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 (안 제7조, 제21조 ~ 제23조)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보칙으로 신설(안 제21조, 제33조, 제34조의2)
-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4. 7.

정선군조례 제2206호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농업용 창고, 영별표1의 제21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와, 종교집회장으로서 방화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말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용 창고,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제4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문화 행사 및 관측활동이란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공중이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 정 이 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읍지역의 건축기준 완화(안 제4조제4항)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 확대(안 제8조의2)
- 축사, 작물재배사 등 시설물의 진입로 규정 완화(안 제14조의2)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41조제5항)
- 공개공지 활용방안 확대(안 제43조제4항)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4. 7.

정선군조례 제2207호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3.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 허가는 경우. 다만,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을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군수가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아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 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타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차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7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

개 정 이 유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도로의 점용기간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준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연간점용료에 대한 분할징수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점용허가의 취소 등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이 단축된 경우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점용료 반환기준을 규정(안 제5조)
-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로 사용목적,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기준을 규정(안 제6조)
- 도로를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 납부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점용료 조정기준을 규정(안 제7조)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4. 7.

정선군규칙 제1163호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균등분 주민세) ①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133조 및 제1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비과세 및 감면) ①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 및 제91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6조의6 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93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3(대장 정리)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군수는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1절의2(제135조의4부터 제135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135조의4(비과세 및 감면) ①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5조의5(신고 및 납부처리) ①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부터 제99호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거나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제103호서식까지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5조의6(특별징수) ①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 법인만 해당 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 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다.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의3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 징수한다.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 징수한다.

- 소득금액 × 제한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frac{\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 (\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⑤부과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5조의7(보통징수) ①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101호부터 제104호까지 서식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9조의9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35조의8(대장 정리) ①군수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장제4절(제148조부터 제156조까지) 및 같은 장 제9절(제165조부터 제169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0호서식부터 제10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4호서식부터 제58호서식까지 및 제83호서식부터 제8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 정 이 유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재편성(안 제132조 ~ 제135조의8)
-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관련규정 삭제
(안 제148조 ~ 제156조, 제165조 ~ 제169조)

정선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4. 7.

정선군규칙 제1164호

정선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교부 후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할 경우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2조제3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업무의 결과보고일을 기준으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7월15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다음년도 1월15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 정 이 유

- 「건축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규칙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건축허가,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개정·신설함
 - 업무대행수수료 청구 시 별지1호 및 별지2호 서식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비율에 따라 청구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1항)
 - 수수료 청구시기를 상반기 7월15일, 하반기 익년 1월15일까지로 규정(안 제2조제3항)
 - 수수료 지급시기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안 제2조제4항)

정선군공고 제2010-176호

공 고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정선군 산업경제과에 비치합니다.

2010. 4. 1.

정 선 군 수

다 음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선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수 유 창 식
- 다. 사업시행지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39-1번지 일원
- 라.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 마. 사업의 내용 : 대중골프장 9홀, 클럽하우스, 관리동, 주차장
- 바. 공고기간 : 2010. 4. 1. ~ 2010. 4. 15

붙임 : 1. 의견서 1부.

2.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조서 1부.

의 건 서

내 용

정선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수용 재결 공고에 따른
의견

201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정선군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조서

○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 용	
신동읍 조동리	59	대	506	506	박 환 남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101-59	반포세무 서		압 류	
							대한보증 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 구 삼성동 141	가압류	
							서초구청 (서울시청)		압 류	
							대한보증 보험 주식회사 (강남할부 보상사무 소)	서울 종로 구 연지동 136-74	근저당	
신동읍 조동리	87	전	1,782	1,782	황경화(업)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9(6/1)	인천광역시 시 동구청		압 류	
신동읍 조동리	93	잡	1,273	644	정 혜 정	인천시 남구 도화동 251-1 평화빌 라 102				

○ 물건조서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 조 및 규격	수량	물 건 소 유 자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신동읍 조동리	90-13	주택	샌드위치판넬조판넬집	231㎡	황경화(엽)윤호정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39(6/1)
		가추	철파이프조아크릴	17.01㎡		
		창고1	블럭스레트	92㎡		
		창고2	철파이프천막	36㎡		
		창고3	블럭스레트	7.16㎡		
		창고4	철파이프합판	5㎡		
		창고5	흙벽돌스레트	50㎡		
		소각장	블럭스레트	13.7㎡		
		바닥	보도블럭	33.4㎡		
		바닥	콘크리트	38㎡		
		계단	벽돌	33.67㎡		
		콘테이너	3×9	2EA		
		놀이시설	미끄럼틀,시소,덤블링	1식		
		담장	능형철망	360㎡		
		담장	함석	46㎡		
		건사	목조	2EA		
		염소사	판넬조스레트	40㎡		
		울타리	그물망,함석,목재	33㎡		
		김치저장고	철파이프천막	20㎡		
		물탱크	FRPø1m	2EA		
		화덕	시멘블럭	1EA		
		비닐하우스	철재비닐	126.6㎡		
		축산보상	염소 16, 개 4	1식		
		밤나무	R20	5주		
		무궁화나무	R10	3주		
		수국	R5	1주		
		복숭아나무	R2	1주		
		대추나무	R30	2주		
		버드나무	R60	1주		
		오가피나무	R5	20주		
		복숭아나무	R20	1주		
		자작나무	R15	1주		
		가문비나무	R30	1주		
		오동나무	R30	1주		
		벚나무	R30	1주		
		자두나무	R30	1주		
		버찌나무	R30	1주		
		은행나무	R30	1주		

정선군공고 제2010-177호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4차 공고

우리군 소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제안을 받았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공모하여 주신 우수한 내용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시는 모든분(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 4. 1.

정 선 군 수

1. 공모기간 : 2010. 4. 1. ~ 2010. 6. 30.

2. 제안자격 :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3. 공모내용(범위 및 내용)

가. 시설현황

- 부지 : 북평리 332-1번지 일원 59,113m²
- 건물 : 본관 및 학습관외 6동 7,762.4m²

나. 공모방법 : 자유제안

- (1) 정선캠퍼스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방안
-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 (3)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용방안

4. 응모방법

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설명자료(PPT) 1부
-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 (3) **부지매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회사 재무재표 등 재무상황 근거자료)**

나. 접 수

- (1) 방 문 :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 (2) 우편 : 233-7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제안담당자 앞(☎033-560-2432, 2438)

5. 공모심사

가. 심사기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1) 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
- 년차별 투자계획

2) 사업 관리운영 계획의 신뢰성

- 사업관리능력
- 시설운영계획

3) 재원조달능력

- 신청자의 능력
- 자기자본조달계획
-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획
- 사업대상지의 확보계획
- 예비재원 조달계획

4) 지역경제기여도

- 지역주민 지원
- 지역사회 지원계획

나. 심사방법

- (1) 활용방안 평가위원회(정선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심사
- (2) 평가기준에 의한 배점평가

다. 결과통보 : 심의 확정후 확정된 안 통보

6. 재산권 협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매각 또는 임대

※ 2009년 부지 및 건물 감정평가액 : 약 80억원

7. 기타 권리승계사항 등

가. 공모된 공모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택된 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선군에 귀속됩니다.

※ 첨부 1. 정선캠퍼스 시설 및 부지현황 1부(정선군청 홈페이지 참조).

2. 활용방안 평가항목 및 기준 1부.

- 한국폴리텍III대학 정선캠퍼스 -
활용방안 평가항목 및 기준

활용방안 :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비 고
개발 사업 계획	○ 개발사업 구상의 적정성 -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기본계획과의 적정성 - 계획의 참신성, 사업의 가능성	
	○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 -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등	
	○ 년차별 투자계획 - 투자계획과 공정비율의 정확도	
사업 관리 운영 계획	○ 사업관리 능력 - 해당사업 참여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 관리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시설운영계획 - 운영방법 - 환경관리 계획	
재원 조달 능력	○ 신청자의 능력 - 신청자(법인)의 재무 상태 - 법인의 경우(전체 출자자의 재무상태) - 지역주민 및 지역법인 참여 비율	
	○ 자기자본 조달계획 - 총투자비 중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조달의 확실성	
	○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획(타인자본 조달시 계획) - 자금차입의 확실성(MOU 체결 등)	
	○ 사업대상지의 확보계획 - 사업계획에 의한 부지확보 계획	
지역 경제 기여도	○ 지역주민 지원 - 총 고용인원, 지역주민 고용계획 - 지역상품 구매계획	
	○ 지역사회 지원계획 -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공사 도급계획 - 당해사업의 지역내 투자계획 -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정선군공고 제2010-193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합니다.

정 선 군 수

2010. 4. 2.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납세자명	현 주 소	압류 부동산	송달불능사유
송교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92-6 지하동 202호 (1통3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8-3대 66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89-2대 235㎡	폐문부재
황희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아파트 103동 601호 (2통11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 전 283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85 전 5812㎡	이사감
김일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73-14 2층 (9통1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374 전 2377㎡	수취인불명
이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46-10 부림빌라 1층2 (8통2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0-22 목조시멘트기와지붕단층주택 67.0㎡	폐문부재
강경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6-5 202호 (6통5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313 전 1931㎡	수취인부재
박우관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4-14 (7통5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265 답 764㎡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265-1 답 378㎡	폐문부재
최돈수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89 산호아파트 104동 203호 (37통4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78-17 대 13㎡	폐문부재
박영채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28-3 (27통3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320 전 2238㎡	주소불명
권지환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627 한솔아파트 102동 1206호 (3통)	1.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 무릉아파트 제101동 제4층 제403호1.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5층 아파트 무릉아파트 101동 1층 272.7㎡ 2층 272.7㎡ 3층 272.7㎡ 4층 272.7㎡ 5층 272.7㎡1. 대지권 14471분의 48	폐문부재
최원석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36-3 (1통4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3-10 부력조세멘와즙단층주택 66.12㎡	폐문부재
지경석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188-1 (3통2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188-1 조적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단층주택 99㎡	수취인부재
유광수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건건동 577-5 401호 (6통2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779-1 대 540㎡	이사감
박준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3 사북선명2차아파트 202동 503호 (9통8반)	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3 사북선명2차아파트 제202동 제503호2.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20	이사감

		사북선명2차아파트 제202동 제503호1.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스라브지붕 13층아파트 1층 331.78㎡ 2층 320.58㎡ 3층 320.58㎡ 4층 320.58㎡ 5층 317.56㎡ 6층 317.56㎡ 7층 317.56㎡ 8층 317.56㎡ 9층 317.56㎡ 10층 317.56㎡ 11층 317.56㎡ 12층 317.56㎡ 13층 317.56㎡ 지하1층 332.43㎡ 1. 대지권 9211분의 36.782. 대지권 9211분의 36.78	
이학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35-2 (12통5반)	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1호1. 15층 아파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콘크리트경사스라브지붕 1층 825.55㎡ 2층 797.50㎡ 3층 797.50㎡ 4층 797.50㎡ 5층 789.70㎡ 6층 789.70㎡ 7층 789.70㎡ 8층 789.70㎡ 9층 789.70㎡ 10층 789.70㎡ 11층 789.70㎡ 12층 789.70㎡ 13층 631.76㎡ 14층 631.76㎡ 15층 631.76㎡ 1. 대지권 15718분의 40	이사감
이호덕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60-7 (17통4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248 임야 11405㎡	수취인불명
전기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632-39 (9통3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69-2 대 205㎡	수취인불명
최대복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444 (2통2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462-5 전 737㎡	폐문부재
윤종명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5 (7통1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133 전 2549㎡	폐문부재
추점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7-19 (8통2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7-19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69.22㎡	폐문부재
백운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39-14 (11통2반)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747-1 임야 7056㎡	폐문부재
박정교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삼송동 80-28 (8통3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583 전 3524㎡	
고재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2-3 (7통1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522 전 8336㎡	폐문부재
김유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516 (4통4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515 전 5064㎡	이사감
이강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갈리 462-2 (2통6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6-40 '전 728㎡	수취인불명
조원복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423 (1통3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423 '대 723㎡	폐문부재
권순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47 (4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47 벽돌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독주택 95.99㎡	폐문부재
유연옥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167-1 (1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167-1 전 2489	폐문부재
전수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07 은평뉴타운 마고정 312동 1101호 (27통3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4 임야 123273㎡	폐문부재
장한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728 이태원주공아파트 103동 201호 (17통2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38 전 2069㎡	수취인불명
조형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36-30 (18통2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278 전 1818㎡	폐문부재
정원식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24 (8통9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162 대 168㎡	폐문부재

아우라지 장수촌영농 조합법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617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597 전 7514㎡	수취인불명
권춘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11-9 (8통4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09-4 대 334㎡	이사감
이왕경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676 (1통1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751-1 답 2579㎡	폐문부재
대한산삼 영농조합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65-1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산166 임야 60099㎡	폐문부재
이주현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90-10 (5통1반)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90-10 주유소용지 1267㎡	폐문부재
이운학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11 (4통1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11 대 550㎡	폐문부재
윤종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29-6 (3통6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815 전 2740㎡	이사감
이종복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09 삼부르네상스아파트 205동 205호 (2통9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1464 전 4668㎡	수취인불명
최순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24-7 (3통6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31-11 전 330㎡	수취인불명
정영숙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22-6 (1통2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7-3 대 83㎡	이사감
강민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0-25 디오빌역삼 1408호 (6통4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62 임야 85587㎡	수취인불명
김진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33-1 (1통9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738 전 2228㎡	폐문부재
김종두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541-4 201호 (3통3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92-1 전 917㎡	폐문부재
최완순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223 솔미마을 한승미메이드2차아파트 201동 1304호 (13통)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13 대 664㎡	폐문부재
홍동주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316-2 (15통4반)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483-1 전 9917㎡	이사감
이선옥	도 강릉시 포남동 1102 (2통3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103-4 전 2750㎡	이사감
박환남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101-59 (23통)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9 대 506㎡	이사감
오초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50-5 (3통3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52-5 대 162㎡	이사감
윤명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2-12 202호 (19통1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302-1 전 2172㎡	수취인불명
임주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98-2 서해벨리 202동 204호 (1통1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73-16 전 2895㎡	주소불명
한상선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553 민속마을쌍용아파트 102동 1002호 (23통3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16-9 임야 2225㎡	이사감
이창무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영통동 988-2 살구골 서광아파트 706동 1001호 (29통2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92-4 대 408㎡	이사감
최순삼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금암동 122-46 (11통2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113 전 15195㎡	이사감
장분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8 (2통3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24 임야 21818㎡	이사감

정선군공고 제2010-201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4. 3.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제정취지

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선군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안 제2조)
- 나. 분묘, 봉안묘의 사용허가는 접수순으로 하며 기단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시행(안 제3조)
- 다. 사용료를 면제·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제출(안 제6조)
- 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안 제8조)
- 마. 사용료외 부대비용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11조)
- 바. 장사시설내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명시(안 제14조)
- 사. 다른 시행규칙의 폐지(부칙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FAX : 560-2588)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전화 : 560-2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선군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선 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정선 하늘터 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등) 군수는 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각 묘역별로 기단의 명칭, 지구, 열, 행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기단별로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암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 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화장유골의 처리와 유골의 인도) 정선 하늘터에서 화장한 유골은 그 유족에게 인도한다. 이 경우 유족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장유골 인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환급) 조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면제·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권의 승계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승계 신청서와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의 통보방법 및 공고기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 사용기간의 종료일 3월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한다.

가. 매장자 인적사항,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기간 및 사유

다. 정선 하늘공원 대표자, 주소, 연락방법 등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용기간의 종료일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 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 한다. 2차 공고 완료 후 처리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관리 등) ①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개장명령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별지 제10-1호 및 제10-2호서식의 묘적부 또는 봉안(납골)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승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승계 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13조에 따라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허가증 교부) ①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사용료 납입영수증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대비용) ①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매장묘 부대비용 : 매장비, 석물비, 석물설치비 등

2. 봉안묘 부대비용 : 작업비, 석물비, 석물설치비 등

②제1항의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시 함께 징수한다.

제12조(표시사항)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묘비의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자의 성명
2. 연고권자의 성명
3. 기타 묘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13조(지도·감독)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장사시설 내의 금지행위) ①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지정된 시설물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묘역 안의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 우려가 있는 행위
5. 묘역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고성방가, 음주난동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②공중위생, 소비절약 및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필요한 음식은 제외한다.

제15조(운영규정) 조례와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시행규칙」
2. 「정선군납골당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정선군공고 제2010-202호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자동차 공매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미거주,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4. 6.

정 선 군 수

자동차공매예고 공시송달 대상자

체납자 성명	주 소	공매대상 차량	체납세목	공시송달사유
박순종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14-11 (3통1반)	강원27노9270	주민세외9건	폐문부재
안영이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5-10 고한주공아파트 105동 301호 (8통11반)	강원27마2623	주민세외17건	폐문부재
홍미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261-15 (9통2반)	강원28노1984	자동차세외9건	수취인불명
권경섭	강원도 원주시 원동 295 원동아파트 202동 402호 (13통2반)	10마1245.강원80노 1889.53러2155.강원2 나4750.강원27노4080 강원8거4393	주민세외13건	폐문부재
전주표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4-9 (25통6반)	강원28나9188.06보 5914	자동차세외12건	폐문부재
효산의료기		강원27노3603	자동차세외4건	수취인불명
이성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81-6 (4 통6반)	강원27더9954강원34더 2976	주민세외9건	수취인불명
임종우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690 (3통4반)	강원28노3937	주민세외14건	폐문부재
최제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28 아리 랑아파트 2동 306호 (3통6반)	51모3226강원28노1960	자동차세외6건	폐문부재
손봉영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81-13 (2반)	51모1258	자동차세외2건	폐문부재
송의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2-76 북 지그린빌라 3동 303호 (11통3반)	02두9619.80노1466	최득세외1건	폐문부재
고강영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14 사북선명오피스텔 813호 (9통4반)	03마6281.51모3308	주민세외10건	폐문부재
윤기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17-1 광원아파트 206호 (1통3반)	51모3812	자동차세외6건	폐문부재

김승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17-1 광원아파트 102호 (1통3반)	강원27노418486거2072 강원80노1530	재산세외14건	폐문부재
이기옥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24-1 (2 통1반)	06루3171	취득세외8건	폐문부재
김재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66-1 (2 통1반)	강원27노9418	주민세외13건	폐문부재
이명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12-71 (12통5반)	51모2338	주민세외11건	폐문부재
유재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74-101 (1통1반)	강원27거3638서울80자 6344	자동차세외9건	수취인미거주
권혁기	경상남도 마산시 중성동 72-33 (4통1 반)	50모7153	주민세외4건	수취인불명
전제민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89-4 성일아 파트 701동 704호 (43통2반)	68가1584	자동차세외8건	수취인미거주
김홍배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48-6 (2 통2반)	강원80노5529.93어 1772.강원27다7708.강 원27노6132강원7거 2181	자동차세32건	수취인불명
유종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8-8 (2 통1반)	강원80노5741	자동차세외17건	수취인미거주
노경집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103 (19통4반)	50수3576	주민세외9건	수취인부재
오병석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봉아파트 13동 101호 (4통1반)	강원80노2418.강원80노 4465	주민세외12건	수취인부재
조동규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509 (1통 4반)	77마4195.53러1474.강 원80노3220	주민세외10건	폐문부재
김영익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66 함백 주공아파트 3동 506호 (6통6반)	강원27두2440.강원7거 2024	주민세외9건	폐문부재
안홍철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25 고한아파트 1505호 (5통4반)	강원28마2596	주민세외12건	폐문부재
정진숙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415 주공4차아 파트 419동 408호 (26통8반)	강원28노1854	주민세외9건	폐문부재
이영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9-807 대흥파크빌라 102호 (9통2반)	강원27라3568	자동차세외14건	폐문부재
강금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양리 290 (2 반)	52로8950	자동차세외4건	폐문부재
나병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49 (7통6반)	강원28노1709	주민세외8건	수취인부재
정의운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2-2 (주)강원랜드사원숙소 D동 508호 (16통 4반)	51누3949	자동차세외3건	수취인부재
김영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1-1 (7 통3반)	93두5342.77마4683.40 주5997.강원80노4556	주민세외25건	폐문부재
김용복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32-130 (44통1반)	강원27노9361	자동차세외5건	수취인부재
김성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4 3 층 (3통5반)	67라8244	자동차세외11건	이사감
김상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820 미 당하마음아파트 103동 1303호 (11통2반)	강원28노2410강원27머 3960	자동차세외19건	주소불명

우성식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3 사북선명2차아파트 202동 703호 (9통8반)	51노3043	자동차세14건	이사감
나무와나무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51모2597	자동차세외18건	이사감
김남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77-5 동 아아파트 2동 507호 (6통4반)	강원2나5773	재산세외10건	이사감
이길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16-45 북성그린아파트 603호 (21통2 반)	강원28거5156	자동차세외7건	이사감
전재선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52 (5통 5반)	강원8마3839.77도 1918.51모1249	주민세외19건	폐문부재
김선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92 (4통 2반)	51모2232	주민세외13건	이사감
김정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14 사북선명오피스텔 1021호 (9통4반)	강원28라9772	주민세외8건	이사감
삼삼화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28-2	강원88사2053.강원88사 2052.강원88사2051.51 모1430.강원88사 2054.51모1430	자동차세외14건	이사감
최종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59 태남 아트빌라 303호 (1통7반)	강원27노9893.강원70노 1238.51모2233	자동차세외8건	이사감
김남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141-13 (4통3반)	02다9152	주민세외10건	이사감
안영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6-1 (6 통2반)	50우8324	주민세외12건	이사감
최종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4-28 (12통5반)	01머9354.47우3500.51 노4383	취득세외19건	수취인불명
정선도시 개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229-3영 동(아)4-405호	51모2837.강원70노 3073.	주민세외26건	이사감
김숙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 선명아파트 104동 901호 (2통14반)	강원28노2514.50모 2169	주민세외14건	이사감
이춘영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64 (8 통3반)	51모3177	주민세외11건	이사감
정일술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61-8 (1 통4반)	강원80노105093두 4140.강원7누2095.강원 70노2097.강원70노 1841	주민세외26건	이사감
사만용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61-12 (9통4반)	강원80마4686.강원27마 2562	주민세외17건	수취인불명
고옥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4-4 (34통3 반)	강원27노3464	재산세외21건	이사감
다성건설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70-5	강원28더1657.02다 9430	자동차세외7건	이사감
윤요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6-6 (7통 1반)	50서2605	주민세외8건	수취인부재
새롬조경 개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84-19	강원80노5479	주민세외12건	이사감
박원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23 (11통8반)	01버9589	주민세외9건	이사감

탁광훈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5-1 (1통6반)	강원27다7893	주민세외11건	이사감
강대성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234-8 (4반)	강원80머6186강원27노8752	주민세외16건	이사감
고윤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158-3 (2통1반)	강원27노9552	자동차세외5건	이사감
영서이엔지	강원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1	03마688.03마6255.93 어1640.89우8395.93더1866.	자동차세외6건	이사감
남황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중앙아파트 2동 302호 (6통12반)	12두6155	주민세외4건	이사감
김양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1 못골아파트 3동 303호 (15통4반)	강원80노3276.41다5080	주민세외13건	이사감
안성찬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산94-31 (1통1반)	77마8193.93거2662.63 저2467.94서2844.94러1113.80노1880.94다5237	주민세외25건	이사감
나충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동원탄좌동원아파트 다동 304호 (11통4반)	54어4460.강원27노8083.강원27노8042	주민세외11건	이사감
김태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 무릉주공아파트 104동 101호 (1통4반)	강원70노2144	자동차세외12건	이사감
강인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7-20 금광아파트 204호 (8통9반)	03마6153	취득세외14건	이사감
정선음료(주)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107	강원27노4741	자동차세외7건	이사감
박용남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7 (5통4반)	강원27노9150	주민세외15건	수취인불명
비앤씨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강원랜드 본관 3층 명품	51모2123	주민세외7건	이사감
대성건설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14-1	강원37나3333.93버5298	자동차세외13건	이사감
유병갑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1 (5통4반)	93버5497.강원80노4959.강원80노5258	자동차세외19건	이사감
함백종합레저타운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28 (6/7)	강원28노2342	자동차세외17건	이사감
덕산전력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1	93어2017.강원98다1028	자동차세외10건	이사감
김영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2-166 목화연립 5동 101호 (20통6반)	강원27라7942	자동차세외16건	폐문부재
우진건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55	32두7524.강원80노3865.강원28노3892	자동차세외22건	이사감
최종천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190 (1통1반)	50모7740.50모7740	자동차세외4건	이사감